

정책연구보고 P52 / 2002. 10

#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최 세 균 (연구 위원)  
어 명 근 (연구 위원)  
서 진 교 (부연구위원)  
박 준 기 (전문연구원)  
이 병 훈 (연구 원)

## 머 리 말

한국과 칠레가 3년여를 끌어온 협상을 끝내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상은 한국의 과일시장 개방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국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방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쌀과 과일 농사로 자원이 이동하고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과일의 관세는 낮은 편이나 식물검역에 의한 수입 가능지역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외국의 과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막고 있다.

칠레는 과일산업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과일 수출국이다. 포도가 가장 많이 생산되며, 포도와 포도주의 수출이 각각 5억달러와 6억달러에 달한다. 말린포도와 포도주스를 포함하면 포도와 관련된 농산물 수출액이 전체 농산물 수출의 40%를 넘는다. 다음으로 수출액이 많은 농산물은 사과로 2억달러 정도가 수출되고 있으며, 그밖에 배, 복숭아, 자두, 키위 등 많은 과일이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과일산업 강국과의 FTA에 대하여 우리나라 과수농가의 우려가 컸다. 전반적으로 협상타결 내용이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 농업부문에 미치는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산업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 타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산업피해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한·칠레 FTA 협상 결과, 칠레의 농업 및 농산물 수출 현황, FTA 체결에 따른 예상 피해, 산업구조조정 대책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연구가 진행된 관계로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생산자, 농민단체, 정부, 학계 등 FTA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2.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 요 약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과수 농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따라서 그동안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FTA 체결이 우리나라 과수 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1. FTA 체결에 따른 과수농업 전망

- 복숭아의 관세를 10년간에 걸쳐 철폐하고, 포도는 우리나라의 단경기인 11월부터 4월 사이의 계절관세를 10년간에 걸쳐 철폐. 복숭아에 대한 식물검역 규제조치는 2008년부터 해제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과일 농가의 소득 감소는 2004년 30억원으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45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11월~4월 사이)를 10년간에 걸쳐 철폐하는 데에 따른 포도농가의 소득 감소는 연간 30억원에서 시작하여 관세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5년 후에는 100억원 수준으로 증가.
  - 복숭아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칠레산 복숭아에 대한 식물검역 규제가 2008년에 해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복숭아 농가의 소득 감소는 2008년 148억원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230억원으로 증가.

- 사과와 배가 예외 품목으로 인정된 협정안은 사과와 배에 대한 TRQ를 요구한 칠레의 안을 수용한 것에 비해 농업피해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됨.
  - 현실적으로 사과와 배에 대한 TRQ 수입 허용은 식물검역 규제의 해제를 의미하며, 이 경우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TRQ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이루어져 과일농가 소득 감소는 식물검역에 의한 수입규제 해제 초기에 2,000억원 이상이 될 우려가 있었음.

<표 >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변화: 과일 및 과채류 포함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과 일 전 체 ( 억 원)	FTA 미체결시	15,775	18,132	21,891	21,635	26,422	21,330	21,265
	타결안		18,103	21,860	21,590	26,356	21,078	20,810
			(29)	(31)	(45)	(64)	(252)	(456)
	칠레요구안		18,015	21,770	19,546	23,302	21,011	20,679
			(117)	(122)	(2,088)	(3,120)	(319)	(586)

주: 1) ( )안은 기준 전망치와의 차이를 나타냄. 시나리오1과 2의 2004년과 2005년 소득감소 차이는 사과와 배의 TRQ 수입을 가정한 것임.

- 우리나라 과일 농업은 관세와 식물검역조치 가운데 식물검역에 의존하여 보호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큼.
- 따라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은 물론 향후 이루어질 DDA 협상, 양자협상 등에 있어서 동식물검역 관련 협상이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관세수준 이상으로 크고 관세는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이므로 관세를 통한 시장보호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 축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쿼터 허용은 그 규모와 칠레의 수출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 그러나 DDA 협상 이후에 관세감축을 포함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협상이 있을 경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 2. FTA에 따른 과수부문 대책

### □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상의 필요성

- 칠레와의 FTA 협정체결로 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나타나게 될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과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중요.
- 가격하락 등으로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폐원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폐원을 유도하고,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하여는 소득보전 방식을 병행하여 과수산업 구조조정과 소득보전을 동시에 실시.
- 다음은 사과와 배의 경우를 예로 보상방안을 나타냈으나 칠레와의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 피해 보상방안 1 : 폐원보상 방안

- 과원 개원 시 농가는 일정 기간동안 생산을 통한 기대소득을 예상하고 투자를 결정함. 따라서 폐원보상은 농가의 기대소득을 고려한 기대소득

보상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원보상 제도는 식물검역 해제로 칠레산 과일의 수입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미리 실시하고, 칠레산 과일이 수입될 경우 소득보전 직불제에 의한 피해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조기폐원 유도를 위한 연차별 보상 차등을 적용
- 폐원보상 수준은 사과(일반재배)의 경우 평균 3,811만원/ha 수준이며, 수령에 따라 최소 613만원, 최대 6,636만원까지 분포함. 시나리오에 따른 재원 규모는 2,000ha를 폐원할 경우 762억원, 3,500ha를 폐원할 경우 1,334억원 정도임.

<표 > 폐원보상 규모의 예(사과 일반재배의 예)

단위 : 억원

	폐원규모 (ha)	보상액 (100%)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4년차 (60%)	5년차 (50%)
보상액 (천원/10a)	-	3,811	3,430	3,049	2,667	2,286	1,905
경작면적 10% 수준의 폐원 가정	2,000	762	686	610	533	457	381

## □ 피해 보상방안 2 :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

- 현재의 과일 수급상황에서 칠레산 과일이 국내에 출하될 경우 해당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지원정

책인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가 불가피함. 칠레산 과일의 수입에 따른 피해가 주로 2006년과 2007년 두 해에 크게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 발생한 소득 감소피해액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보상 규모 결정

- 사과의 직불액 규모는 보상률을 소득감소분의 80%로 할 때 2006년에는 236천~239천원/10a, 2007년에는 364천~366천원/10a 수준이며, 배는 2006년에는 360천원/10a, 2007년에는 515천원/10a 수준으로 나타남.
  - 보상률 60%로 할 경우 사과는 2006년에 449억~453억원, 2007년에는 691억~695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며, 배는 2006년에 677억원, 2007년에는 957억원 정도가 소요됨.
- 소득보전 직불제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소득보상률을 60%로 하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될 경우에도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예에서 나타난 배의 경우 등)에는 소득보상보다는 폐원보상을 통한 생산 감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최소허용보조 수준과 농가의 참여의식 고취 등을 고려 할 때 소득보전 직불제는 프로그램 참여 농가가 일정부분을 자조금 등의 형식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될 되어야 함.

##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칠레산 과일이 국내시장에 출하되면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저수고밀식재배(사과)와 Y자 밀식재배(배)와 같은 생력화와 저비용 과원관리 방식 도입과 그에 대한 지원 필요



- 소비자의 과일소비 행태가 고급화되고 있으므로 물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품질관리 및 상표관리를 통해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과정 관리 강화.
- 고품질의 가공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보다는 저급품의 시장격리 차원의 과일가공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품목별 자조금제도를 활성화하여 국산 과일에 대한 유통촉진, 수출 증대, 가격 및 소득 안정화 사업에 생산자의 참여 제고.

# 목 차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한·칠레 FTA 추진 경과 .....	2
2.1. 경과 .....	2
2.2. 협상타결 내용 .....	4
3. 칠레의 농업 .....	5
3.1. 곡물 .....	7
3.2. 과일 .....	7
3.3. 채소 .....	10
3.4. 축산물 .....	10
4. 칠레의 농산물 교역 .....	12
5. 한국과 칠레의 농산물 교역 .....	15
6. 칠레의 FTA 체결시 민감품목 처리 .....	17
6.1. 칠레-멕시코 .....	17
6.2. 칠레-MERCOSUR .....	18
6.3. 칠레-캐나다 .....	19
6.4. 칠레-EU .....	20

7. 한·칠레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	20
7.1. 한·칠레 FTA와 농업 .....	20
7.2. 수입 증가 우려 품목 .....	21
7.3. 타결안과 칠레측 요구안 .....	23
7.4. 시나리오별 피해액 추정 .....	24
8. 피해대책 및 과수산업 발전 방향 .....	33
8.1. 과수산업 현황 .....	33
8.2.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상의 필요성 .....	38
8.3. 폐원보상 방안 .....	39
8.4.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 방안 .....	45
8.5.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48
8.6. 농가의 자구노력 지원 .....	52
부    록 .....	54

## 표 목 차

<표 1>	한국과 칠레의 주요 농업지표 비교 .....	6
<표 2>	칠레의 곡물 수급 현황 .....	8
<표 3>	칠레의 과일류 수급현황 .....	9
<표 4>	칠레의 채소류 및 기타 품목의 수급현황 .....	10
<표 5>	칠레의 축산물 수급현황 .....	11
<표 6>	칠레의 주요 농산물 수출현황 .....	14
<표 7>	칠레의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	15
<표 8>	한국의 대칠레 농산물 교역현황 .....	16
<표 9>	칠레와 미주 국가와의 FTA 관세감축 일정 .....	18
<표 10>	칠레-MERCOSUR 협정 품목 리스트 .....	19
<표 11>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칠레 농산물 현황(2000년 기준) .....	22
<표 12>	칠레산 주요 농산물 수입가격 추정 .....	23
<표 13>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변화: 과일 전체 .....	25
<표 14>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변화: 사과 .....	26
<표 15>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변화: 배 .....	28
<표 16>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변화: 포도 .....	29
<표 17>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변화: 복숭아 .....	30
<표 18>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변화: 여타 과일 .....	31
<표 19>	재배면적 규모별 농가수 비중(2000년) .....	33
<표 20>	과수농가 경영주의 연령 구조(2000년) .....	34
<표 21>	과수농가의 전·겸업 비중(2000년) .....	35

<표 22>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2001년) .....	35
<표 23>	과일 1인당 소비량 동향 .....	37
<표 24>	사과(일반재배) 수령별 보상액(안) .....	43
<표 25>	시나리오별 사과(일반재배) 폐원보상액 .....	44
<표 26>	사과 소득 보전 직불액 .....	47
<표 27>	배 소득 보전 직불액 .....	48
<표 28>	사과 연차별 수량 및 노동력 절감 효과 .....	49
<표 29>	사과 재배방법별 경영성과 비교 .....	49
<표 30>	배의 연차별 수량 및 노동력절감 효과 .....	49
<표 31>	배 재배방법별 경영성과 비교(10a) .....	50

## 그림 목 차

<그림 1>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변화: 과일 전체 .....	25
<그림 2>	과일류의 가공 비중 추이(3년 이동평균) .....	37
<그림 3>	과수산업의 특성과 안정화 대책 .....	39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협상을 비롯하여 일본, 멕시코, 미국, 아세안 등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FTA 체결을 구상중에 있음.
- FTA 체결은 WTO 농업협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FTA는 협정체결 대상국가에 따라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한·칠레 FTA는 2000년 12월 4차 협상 이후 1년 이상 지연되었으나 2002년 2월 협상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제5차 협상이 2002년 8월 칠레에서 개최된 바 있음.
- 한·칠레 FTA 협상은 제5차 협상에서도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문제에 있어 이견을 보임. 이에 따라 10월에 개최될 6차협상 이전에 의견조정을 위한 회의가 9월과 10월 초에 제네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음.
- 이러한 이견조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2002년 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 양국이 의견차이가 컸던 분야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 내고 협상을 종료하였음.
- 따라서 이 연구는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을 추정하

고 이에 대한 보상대책과 피해산업의 구조조정 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음.

## 2. 한·칠레 FTA 추진 경과

### 2.1. 경과

-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임. 1990년대 중반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FTA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1998년 11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 회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의결 이후임.
  - －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주요 국가들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 여기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이 포함됨.
- 이러한 결정은 외환위기 극복,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개방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며, 개방적 통상정책 시행을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 외자유치 확대, 수출시장 개척, 지역주의 심화 대응 등이 주요 요인임.
- 칠레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은 산업구조의 보완성(한국: 공산품 수출, 칠레: 구리, 원목, 농산물 등 1차산품 수출), 농업 피해 최소화(계절적 차이 및 거리 상의 문제 고려), 10여개 국과 FTA 체결하고 있는 칠레를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확보하자는 취지였음.

- 여기에 더하여 경제규모가 비교적 작은 국가를 선택함으로써 최초로 시도하는 FTA 협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FTA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한 것도 칠레를 선택한 의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농업계를 중심으로 경쟁적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와의 FTA가 바람직하다는 점, 칠레는 농업 강국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이 대두되어 왔음.

#### ○ 추진 경과

- FTA 추진 합의: 1998년 11월 쿠알라룸푸르 제6차 APEC 정상회의
- FTA 협상 개시 선언: 1999년 9월 뉴질랜드 제7차 APEC 정상회의
- 실무 협상: 네 차례의 협상(1999. 12.~2000. 12.), 2001. 7. 발효 목표로 추진
- FTA 체결 의지 확인: 2000년 11월 브루나이 APEC 정상회의
- 한국의 농산물 양허안 마련: 2001. 2.
- 협상 지연: 2001. 3. 이후 칠레의 수정안 미제출로 5차협상 지연
- 칠레의 예외없는 관세화 요구: 2001. 5. 칠레측 한국의 양허안 거부 및 예외없는 관세화 요구
- 한국 정부의 조속 추진 의지 확인: 2001. 7.
- 한·칠레 차관급 간담회: 2001. 7. 외교부는 농림부에 수정된 농산물 관세 양허안 요구
- 협상재개: 2002년 2월(LA). 2002년 7월중 5차협상 재개 합의
- 5차협상: 2002년 8월, 칠레에서 개최
- 6차협상: 2002년 10월, 제네바에서 개최. 협상종료

#### ○ 쟁점

- 한국의 농산물 관세 양허안과 칠레의 가전제품 등 공산품에 대한 관



세양허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 관세 양허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는 네 차례의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서비스 및 투자, 기타 무역 관련 조치, 분쟁해결 절차 등.
- 한국은 관세철폐 등 협상 예외 품목으로 쌀,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을 포함시키고 포도는 계절관세(우리나라 단경기인 11월부터 4월까지에 한해 관세를 10년간 철폐)를 도입하여 수출하기에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양허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과실류 수출이 전체 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칠레로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므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 그러나 양국은 민감품목인 우리나라의 사과와 배를 예외 품목으로 하고 칠레는 이에 상응하는 품목으로 세탁기와 냉장고를 예외품목으로 하는 선에서 타결.

## 2.2. 협상타결 내용

- 이번 협상에서 예외 또는 특별취급을 받은 품목별 유형은 제외 품목, 계절관세 품목,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 등임.
  - 제외 품목은 쌀, 사과(신선), 배(신선) 등 3개 품목이며, 계절관세 대상 품목은 포도(신선) 1개 품목임.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는 11월부터 4월까지이며, 계절관세는 10년간 철폐됨. 따라서 포도의 수출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의 WTO 관세양허 계획에 따르며 한·칠레 FTA로 인

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없음.

- DDA 협상 이후 논의 대상 품목은 두 가지 유형으로 소량의 TRQ가 제공되는 품목과 TRQ가 제공되지 않는 품목임.
  - TRQ 미제공 품목: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보리, 콩, 옥수수 등 곡류, 유제품, 냉동돈육, 천연꿀, 녹용 등 축산물, 참깨, 잣, 은행, 녹차, 수박 등 특용작물임(부표 참조)
  - TRQ 제공 품목: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등
- 10년내 관세철폐 품목: 돼지고기, 닭고기(미절단, 냉장), 요구르트, 치즈, 소시지, 백합, 토마토, 오이, 레몬, 복숭아, 키위, 살구, 멜론, 딸기 등
- 5년내 관세철폐: 칠면조, 양, 튜립, 장미, 난초, 카네이션, 버섯, 포도주, 위스키, 너트류, 아몬드, 커피 등
- 즉시 관세철폐: 종축, 밀, 수수, 당밀, 면실 등

### 3. 칠레의 농업

- 칠레의 GDP는 우리나라의 15% 수준인 700억 달러이며, 농업생산액은 70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1/3 수준임. 칠레의 경우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우리나라는 4.6% 수준임(2000년 기준).
  - 칠레의 1인당 GDP는 4,600 달러로 우리나라(9,800 달러)의 1/2 수준

- 칠레의 인구는 1,521만 명(우리나라의 1/3 수준)이고 농가인구는 241만 명으로 농가인구 비중은 16%임.
- 국토면적은 7,566만 ha로 우리나라의 7.5배에 달하나, 경지면적은 230만 ha로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함.

<표 1> 한국과 칠레의 주요 농업지표 비교

			1996	1999	2000
칠레	국민생산 10억달러	GDP	68.6	67.7	70.5
		농업생산액	6.2	7.0	7.4
		비중(%)	9.0	10.3	10.5
	인 구 (천명)	총인구	14,421	15,019	15,211
		농업인구	2,458	2,428	2,416
		비중(%)	17.0	16.2	15.9
	면 적 (1000ha)	총면적	75,663	75,663	75,663
		경지면적	2,300	2,294	N.A.
		비중(%)	3.0	3.0	N.A.
한국	국민생산 (10억달러)	GDP	520.2	406.1	457.2
		농업생산액	30.2	20.7	21.0
		비중(%)	5.8	5.1	4.6
	인 구 (천명)	총인구	45,336	46,403	46,740
		농업인구	5,107	4,337	4,101
		비중(%)	11.3	9.3	8.8
	면 적 (1000ha)	총면적	9,931	9,943	9,946
		경지면적	1,945	1,899	1,889
		비중(%)	19.6	19.1	19.0

자료: World Bank, FAO

### 3.1. 곡물

- 칠레의 곡물 생산량은 254만톤으로 소비량 429만톤의 60%에 불과함. 특히 자급률이 낮은 품목은 옥수수와 보리로 36%, 55% 수준임. 쌀 생산량은 9만톤이며 자급률은 68%임. 칠레는 곡물 순수입국이며 감자와 고구마정도를 자급하고 있음.

### 3.2. 과일

- 과수는 칠레 농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연간 과일 생산량이 400만톤이며 소비량은 200만톤으로 자급률이 200%에 달함. 특히 수출이 국내 소비에 우선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과일은 주로 수출용으로 판매됨.
- 과일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포도로 190만톤이 생산되며 이 가운데 100만톤이 국내에서 소비됨. 포도 소비량이 많은 것은 양조용 수요가 많기 때문임.
- 포도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과일은 사과로 연간 100만톤 정도가 생산되며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은 17만톤에 불과하여 자급률은 500% 이상임.
- 배 생산량은 33만톤이며 소비량은 20만톤으로 자급률은 170% 수준임. 그밖에 복숭아와 자두가 각각 27만톤, 16만톤 정도씩 생산되며 이들의 자급률도 150% 수준임.
- 오렌지류의 생산량은 비교적 적은 20만톤 수준이며 국내 소비량은 18

만톤으로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지는 않음.

<표 2> 칠레의 곡물 수급 현황

단위: 1,000톤, %

		1996	1997	1998	1999	2000
곡물	생산량	2,526.7	3,048.2	3,063.3	2,147.6	2,544.8
	소비량	3,740.5	4,015.2	4,166.8	4,234.8	4,289.3
	자급율	67.5	75.9	73.5	50.7	59.3
밀	생산량	1,227.2	1,676.9	1,682.0	1,196.6	1,492.7
	소비량	1,916.2	1,843.1	1,895.8	1,910.0	1,954.5
	자급율	64.0	91.0	88.7	62.7	76.4
옥수수	생산량	931.6	880.7	943.3	624.0	652.0
	소비량	1,307.5	1,636.0	1,769.3	1,843.1	1,832.7
	자급율	71.2	53.8	53.3	33.9	35.6
쌀	생산량	101.9	58.4	69.6	40.7	90.1
	소비량	152.6	151.3	140.4	146.2	132.3
	자급율	66.8	38.6	49.6	27.8	68.1
귀리	생산량	199.6	346.6	250.2	201.3	247.9
	소비량	175.7	240.6	254.1	171.0	191.3
	자급율	113.6	144.1	98.4	117.7	129.6
호밀	생산량	2.3	4.5	2.9	3.5	2.4
	소비량	2.3	4.4	2.9	3.5	2.5
	자급율	100.9	101.8	100.0	100.0	98.0
보리	생산량	64.1	81.1	115.4	81.5	59.6
	소비량	64.4	70.1	79.8	79.9	107.9
	자급율	99.5	115.7	144.5	101.9	55.3
채두류	생산량	3.3	2.3	3.5	1.2	1.8
	소비량	8.7	7.1	8.1	8.4	8.6
	자급율	37.8	31.5	43.4	13.6	21.0
콩류	생산량	65.6	41.6	55.5	30.8	44.3
	소비량	30.5	32.0	31.1	26.9	34.5
	자급율	214.9	130.2	178.5	114.3	128.4
감자	생산량	827.6	1,114.4	792.0	994.7	988.2
	소비량	839.6	1,030.4	922.5	1,014.1	1,008.5
	자급율	98.6	108.2	85.9	98.1	98.0
고구마	생산량	7.0	7.0	7.0	7.0	7.5
	소비량	7.0	7.0	7.0	7.0	7.5
	자급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FAO, <http://apps.fao.org>

&lt;표 3&gt; 칠레의 과일류 수급현황

단위: 1,000톤, %

		1996	1997	1998	1999	2000
과일류	생산량	3,674.7	3,922.7	3,875.6	4,080.5	4,087.8
	소비량	1,838.7	2,078.0	1,863.6	1,895.7	2,052.5
	자급율	199.9	188.8	208.0	215.3	199.2
포도	생산량	1,629.9	1,669.2	1,642.1	1,575.0	1,895.0
	소비량	963.1	991.1	934.6	868.0	1,006.5
	자급율	169.2	168.4	175.7	181.5	188.3
레몬, 라임	생산량	120.0	110.0	115.0	110.0	116.6
	소비량	114.0	98.7	102.9	95.8	98.2
	자급율	105.2	111.4	111.7	114.8	118.8
사과	생산량	860.0	940.0	1,000.0	1,165.0	908.7
	소비량	122.1	227.2	170.0	173.9	164.4
	자급율	704.4	413.8	588.2	669.8	552.6
체리	생산량	22.0	23.0	18.0	27.0	31.1
	소비량	15.2	19.5	12.5	19.3	24.1
	자급율	144.8	117.8	144.5	139.9	128.7
복숭아	생산량	280.0	305.0	269.0	310.0	266.0
	소비량	186.4	220.6	200.7	216.6	182.2
	자급율	150.2	138.2	134.0	143.1	146.0
배	생산량	240.0	333.0	320.0	350.0	332.5
	소비량	77.6	157.1	154.5	180.7	197.1
	자급율	309.4	212.0	207.1	193.7	168.7
자두	생산량	150.0	148.0	142.0	198.0	158.4
	소비량	86.5	81.4	86.2	108.9	99.1
	자급율	173.4	181.9	164.7	181.9	159.8
호두	생산량	11.0	10.5	10.2	10.8	11.3
	소비량	7.9	6.7	7.3	5.8	7.9
	자급율	139.0	156.3	140.1	187.8	144.1
오렌지, 귤	생산량	110.0	110.0	96.0	85.0	88.0
	소비량	110.6	117.2	104.2	87.1	87.3
	자급율	99.4	93.9	92.2	97.6	100.8
견과류	생산량	16.2	16.3	16.3	18.2	19.5
	소비량	6.6	6.6	8.9	6.5	8.9
	자급율	245.1	246.2	182.9	281.7	220.2

자료: FAO, <http://apps.fao.org>

### 3.3. 채소

- 채소류 생산량은 250만톤, 소비량은 200만톤으로 자급률은 126%임. 토마토가 대표적인 과채류에 속하며 연간 120만톤 이상이 생산되어 50만톤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표 4> 칠레의 채소류 및 기타 품목의 수급현황

단위: 1,000톤, %

		1996	1997	1998	1999	2000
채소류	생산량	2,894.0	2,362.7	2,521.7	2,591.7	2,593.8
	소비량	2,279.5	1,812.5	1,893.8	1,899.4	2,054.5
	자급율	127.0	130.4	133.2	136.4	126.2
토마토	생산량	1,369.7	1,121.0	1,205.2	1,243.0	1,217.1
	소비량	837.3	627.9	640.1	631.9	743.9
	자급율	163.6	178.5	188.3	196.7	163.6
양파	생산량	389.6	197.7	219.4	262.7	282.3
	소비량	346.2	175.5	196.4	221.6	254.3
	자급율	112.5	112.7	111.7	118.5	111.0
올리브	생산량	8.0	12.0	7.0	12.0	13.0
	소비량	7.1	10.9	5.8	11.2	10.9
	자급율	113.3	110.2	121.5	106.8	119.7
포도주	생산량	382.4	454.9	547.5	480.7	667.4
	소비량	229.2	189.3	262.0	276.5	296.2
	자급율	166.8	240.3	209.0	173.8	225.3

자료: FAO, <http://apps.fao.org>

### 3.4. 축산물

-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염소고기 포함) 등이 생산되고 있음.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닭고기로 38만톤이 생산되며 소비량은 35만

톤임.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각각 26만톤, 23만톤이 생산되며 자급률은 107%와 67%임.

- 돼지고기의 생산량과 자급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쇠고기는 생산량과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음. 곡물 생산량이 부족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소가축 위주의 생산 패턴을 나타냄.

<표 5> 칠레의 축산물 수급현황

단위: 1,000톤, %

		1996	1997	1998	1999	2000
육류	생산량	774.0	811.5	858.4	841.6	891.9
	소비량	834.9	879.5	910.2	912.3	957.3
	자급율	92.7	92.3	94.3	92.3	93.2
쇠고기	생산량	259.5	262.1	256.3	226.4	226.4
	소비량	337.7	363.1	346.7	328.0	337.4
	자급율	76.8	72.2	73.9	69.0	67.1
돼지고기	생산량	184.7	208.7	235.0	243.7	261.5
	소비량	182.4	196.9	219.3	237.0	243.9
	자급율	101.2	106.0	107.2	102.8	107.2
가금육	생산량	304.9	313.6	339.2	344.0	378.1
	소비량	291.8	295.2	320.1	324.4	353.6
	자급율	104.5	106.2	106.0	106.1	106.9
양, 염소고기	생산량	13.5	15.1	16.7	18.1	16.5
	소비량	11.7	12.4	13.0	13.4	12.7
	자급율	115.4	122.3	128.3	134.4	130.3
계란	생산량	96.1	100.8	99.7	104.5	109.8
	소비량	94.3	98.3	97.3	103.3	108.9
	자급율	101.9	102.5	102.4	101.2	100.8
우유	생산량	1,934.0	2,060.0	2,090.0	2,060.1	2,000.2
	소비량	2,137.7	2,141.4	2,206.7	2,096.3	2,114.1
	자급율	90.5	96.2	94.7	98.3	94.6
벌꿀	생산량	5.0	2.6	5.0	4.0	5.0
	소비량	1.4	1.1	0.6	2.3	0.4
	자급율	357.1	235.8	793.7	175.4	1315.8
버터	생산량	6.5	9.6	11.2	11.0	9.9
	소비량	9.3	10.7	12.2	11.4	11.6
	자급율	69.4	89.3	91.4	96.2	85.0

자료: FAO, <http://apps.fao.org>



- 벌꿀 생산량은 5천톤이며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음. 양고기와 염소고기 생산량은 각각 1만 7천톤 수준임.

#### 4. 칠레의 농산물 교역

- 칠레의 상품 수출액은 182억달러로 우리나라의 10% 수준임. 그러나 농산물 수출은 28억달러로 우리나라의 2.2배가 넘는 수준임.
  - 농산물(임산물 제외)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0.7%로 매우 낮으나, 칠레의 경우 15.7%를 차지하여 칠레의 농산물 수출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 가운데 하나임.
- 농산물 수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목은 포도와 포도주로 각각 5억달러와 6억달러가 수출되고 있음. 말린포도와 포도주스 수출액이 각각 4,900만달러와 8백만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포도와 관련된 농산물 수출액이 전체 농산물 수출의 40%를 넘고 있음.
- 다음으로 수출액이 많은 농산물은 사과로 2억달러 정도가 수출되고 있음. 그밖에 아보카도, 키위, 복숭아가 각각 6천만달러 이상 수출됨.
- 자두는 말린 것을 포함하여 연간 수출액이 7,500만달러에 달함. 토마토 페이스트와 배의 수출액은 각각 5,700만달러 수준임. 호두 수출액은 2,200만달러임. 체리의 수출액은 1,900만달러로 수출 규모가 큰 품목에 속함.

&lt;표 6&gt; 칠레의 주요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천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총 상품교역액	15,546,100	16,654,100	15,077,200	16,116,700	18,158,000
총 농산물교역액	2,629,830	2,543,259	2,762,364	2,779,855	2,849,417
와 인	293,743	423,990	510,422	523,652	576,822
포 도	429,390	413,954	403,424	406,920	523,545
사 과	223,273	189,581	233,443	229,301	181,705
옥수수	37,394	50,244	84,327	61,895	66,637
아보카도	15,247	14,273	41,383	43,714	64,644
키 위	67,719	65,045	78,570	58,256	62,867
복숭아	71,530	57,316	48,083	62,900	60,457
토마토 Paste	88,602	72,013	86,593	99,146	57,558
배	73,192	73,749	68,751	71,573	57,118
건포도	34,410	41,555	37,243	45,678	48,671
자 두	51,506	49,544	43,104	60,474	46,691
돼지고기	6,398	23,491	31,186	24,631	45,898
닭고기	6,198	10,620	10,092	10,326	13,832
자두(건조)	21,933	19,822	21,146	24,479	28,155
우 유	26,232	28,485	27,694	31,286	26,710
초콜릿	23,958	23,797	25,921	26,548	25,202
설탕과자	24,378	25,921	22,270	21,148	18,675
체 리	18,441	10,328	15,174	20,561	18,637
피멘토, 올스파이스	20,074	22,488	22,523	16,848	18,582
과일 주스	30,509	25,194	13,118	17,560	18,524
호두(미탈각)	15,351	14,436	14,106	14,108	14,023
해바라기씨	7,607	3,658	5,094	10,781	13,936
레몬, 라임	3,503	8,480	8,928	10,284	13,606
보리	17,310	13,975	15,786	18,876	13,468
담배잎	19,515	12,986	13,250	12,995	13,466
딸 기	6,707	7,046	7,933	9,941	13,142
마 늘	9,248	7,590	5,118	13,265	9,135
담 배	1,037	1,031	1,291	8,725	8,916
파 이	18,928	14,964	15,369	16,122	8,910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	20,770	15,690	10,115	8,960	8,589
귀 리	7,961	7,423	7,120	6,579	8,401
양 과	10,378	7,282	8,475	10,039	7,938
호 두	9,638	9,346	6,819	11,622	7,930
아몬드	11,773	8,313	6,489	6,388	7,826
포도주스	27,018	12,498	24,166	7,067	7,740

자료: FAO, <http://apps.fao.org>

&lt;표 7&gt; 칠레의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달러

칠레의 수입(천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총 상품교역액	17,823,500	19,662,300	18,779,000	15,137,600	16,721,800
총 농산물교역액	1,276,993	1,292,214	1,308,300	1,218,541	1,262,773
곡 류	319,948	224,199	212,745	286,159	246,517
쇠고기	143,014	187,598	176,323	165,314	179,859
옥수수	84,856	119,835	113,726	145,992	136,425
유지작물박	87,707	96,141	84,259	73,916	86,211
대두박	78,710	85,532	75,507	67,803	80,110
소 맥	177,555	55,705	65,803	87,528	68,589
마가린 등	745	26,369	15,835	18,422	63,165
우 유	76,056	42,353	46,126	31,317	53,891
설탕	65,242	97,718	63,253	57,383	52,788
바나나	37,784	37,950	39,289	38,196	39,261
분 유	51,219	19,587	27,537	18,041	30,156
초콜릿	12,808	16,894	17,091	15,304	24,201
목 화	47,364	45,829	33,852	17,870	20,079
쌀	19,558	31,540	26,808	33,062	18,951
차	18,403	18,937	21,408	18,874	17,306
커피(가공)	28,555	27,682	22,807	16,595	16,684
해바라기씨유	38,990	47,789	66,988	40,590	15,606
콩	1,674	13,013	13,098	13,050	14,924
치즈	14,141	16,172	12,731	8,789	14,899
보리	11,710	7,189	1,738	8,102	14,434
콩(나무)	8,843	8,175	9,241	10,226	12,093
담배	8,087	7,450	15,453	7,812	10,419
생고무	19,506	16,552	10,915	6,470	8,753
토마토(냉동)	6,153	8,373	9,112	9,762	8,603
담배잎	6,148	5,244	13,086	5,217	8,111
렌즈콩	4,521	4,774	5,137	5,531	7,536
마테차	9,151	8,355	7,809	6,428	6,389
수수	20,924	7,388	2,396	7,371	5,814
커피(정제)	1,387	2,633	3,421	2,457	4,998
보리	5,585	7,794	8,723	7,465	4,993
코코아 파우더+케익	4,064	4,831	6,560	5,357	4,768
신선채소	663	59	39	370	4,614
파인애플	6,077	6,398	4,423	5,300	4,434
와인	822	1,570	7,766	5,223	4,375
올리브유	3,343	3,581	3,681	3,191	4,334
코코아 버터	7,878	6,772	7,165	4,950	3,980
버터	6,186	3,673	2,662	1,292	3,256

자료: FAO, <http://apps.fao.org>

- 과일 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농산물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임. 돼지고기 수출액은 4,600만달러, 닭고기 수출액은 1,400만달러임.
- 칠레의 상품 수입 규모는 167억달러로 15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농산물 수입액은 13억달러로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임.
  - 칠레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 15억달러는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와 동일한 수준임.
- 주요 수입 농산물은 곡물류와 축산물로 옥수수, 밀, 쇠고기, 유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5. 한국과 칠레의 농산물 교역

- 한국의 대칠레 수출액은 5억 7천만달러(2001년 기준)이며, 수입액은 7억달러로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무역에 있어서 1억 3천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무역수지 적자는 1999년 3억 6천만달러, 2000년 3억 1천만달러 등임.
- 한국과 칠레 양국간의 농산물 교역규모는 매우 작은 편으로 우리나라가 칠레에 수출한 농산물은 55만달러(2001년)에 불과함. 칠레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1,2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포도가 844만달러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그밖에 키위, 조제된 포도, 포도주, 조제된 토마토 등이 소량 수입되고 있음.

<표 8> 한국의 대칠레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천달러

		1999	2000	2001
수출	총 수출액	455,391	593,047	572,596
	농산물 수출액	427	800	547
	인삼(121120)	81	100	62
	기타 파스타(190230)	146	107	99
	기타 사료용조제품(230990)	48	316	256
	권련(240220)	62	131	1
	디-글루시톨(290544)	35	55	28
수입	총 수입액	815,297	902,017	696,109
	농산물 수입액	14,685	14,776	12,096
	이끼,지의(60410)	450	568	545
	포도(80610)	9,454	10,348	8,438
	키위(81050)	588	748	647
	과종용 채소종자(120991)	618	744	221
	설탕과자(170490)	401	271	95
	조제, 저장처리한 기타 토마토(200290)	1,718	636	551
	포도주와 포도즙(220421)	356	432	584
	사료용조제품(230990)	373	289	388

주: ( )안은 HS번호임.

자료: www.kotis.net

## 6. 칠레의 FTA 체결시 민감품목 처리

- 칠레는 여러 나라들과의 FTA 체결에 있어서 상호 민감품목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칠레는 미주 국가와의 FTA 체결에서 대부분 관세철폐의 예외 품목을 두고 있음. 따라서 관세철폐 대상 품목의 비중이 91%에 머무른 경우도 있음(베네수엘라와의 경우).

### 6.1. 칠레-멕시코

- 멕시코와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부분은 즉시철폐, 관세인하 프로그램(사과의 경우), 관세철폐 예외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됨.
- 관세철폐에서 예외가 적용된 농산물들은 HS 8단위 분류 기준으로 칠레는 57개 품목, 멕시코는 59개 품목임.
  - 품목별로는 유제품(HS 분류 04류), 포도(08류), 맥아, 밀 등 곡물류(10류, 11류), 식용유(15류), 당류(17류), 담배(24류) 등임.
- 포도의 관세율은 매년 4월 15일~5월 31일 기간 동안만 계절적으로 운용

&lt;표 9&gt; 칠레와 미주 국가와의 FTA 관세감축 일정

체결 국가	전체 품목 대비 무세화 품목 비중	단계별 무세화 비중	무세화 누적 비중
에콰도르	96.8	96.4(1997) 0.4(2000)	96.4(1997) 96.8(2000)
콜롬비아	91.1	85.3(1997) 5.8(1999)	85.3(1997) 91.1(1999)
MERCOSUR	100.0	63.0(2004) 15.4(2006) 19.7(2011) 0.8(2012) 1.1.(2014)	63.0(2004) 78.4(2006) 98.1(2011) 98.9(2012) 100.0(2014)
멕시코	98.3	95.2(1996) 3.1(1998)	95.2(1996) 98.3(1998)
베네수엘라	96.4	91.1(1997) 5.3(1999)	91.1(1997) 96.4(1999)

자료: 어 명근 외(1999).

## 6.2. 칠레-MERCOSUR

- 칠레-MERCOSUR간 협정의 주요 내용은 관세감축 일정에 따라 크게 5가지로 구분됨.
  - － 역사적 유산 품목, 일반 관세인하 품목, 민감품목, 특별민감품목, 유예기간 인정 품목 등임.
  - － 유예기간 인정 품목은 설탕, 식용류, 쇠고기, 소맥 등으로 관세인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4년차, 8년차 및 11년차부터 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품목별로 2006년, 2011년, 2014년에 관세를 완전 철폐함.

- 칠레의 경우 밀과 밀가루의 무세화는 18년 차인 2014년에 이루어지며, 설탕은 11년 차부터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6년 차인 2012년에 관세 철폐가 이루어짐.

<표 10> 칠레-MERCOSUR 협정 품목 리스트

분류	전체 적용 품목 수	농산물 품목 수 및 품목명	
유예품목	칠레 : 158품목	89	밀 및 가공품, 식용류, 쇠고기, 쌀, 설탕, 일부 과일가공품, 커피, 포도주 등
	MERCOSUR : 143품목	42	과일류(사과, 배, 복숭아, 자두), 일부 과일 가공품, 커피, 포도주 등
민감품목	칠레 : 290품목	90	옥수수, 귀리, 보리, 돼지고기, 가금육, 초콜렛, 빵류 등
	MERCOSUR : 311품목	87	올리브, 아보카도, 오렌지, 체리, 살구, 식용류, 초콜렛, 빵류, 과일 가공품 등
특별민감품목	칠레 : 193품목	0	
	MERCOSUR : 210품목	1	신선 토마토

자료: 어 명근 외(1999).

### 6.3. 칠레-캐나다

- 칠레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16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이행기간을 차등 적용
  - 제분용 소맥은 18년내 무세화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낙농제품, 닭고기, 계란, 배합사료 등은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



- 캐나다는 관세인하 방식을 10가지로 나누어 품목별 차등적으로 관세를 인하
  - 산동물,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낙농제품, 육류가공품, 음료 등 민감품목은 무세화 계획에서 제외함.
  - 화훼류, 채소류, 과실류 등은 칠레가 해당품목을 관세환급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무세화하거나 7년 정도의 이행기간을 거쳐 무세화

#### 6.4. 칠레-EU

- EU는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 농산물 520개 품목을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으로 설정하였음.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TRQ 제공이나 관세감축 등 시장개방 일정을 DDA 협상 이후로 미룬 상태임.
  - 그밖에 TRQ는 제공하지만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223개에 달함.
- EU는 칠레와의 협상에서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전체의 41%에 달하는 966개 품목이나 설정하였음.

### 7. 한·칠레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 7.1. 한·칠레 FTA와 농업

-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칠레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칠레 수출증가 효과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칠레의 관세수준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칠레 농산물 수입은 동식물 검역 협상, 관세 인하 수준 등 협상에 따라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 7.2. 수입 증가 우려 품목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수입이 우려되는 10대 농산물은 사과, 배, 포도(관련제품 포함), 복숭아, 자두, 체리, 호두 등 과실류 7개 품목과 돼지고기, 닭고기, 벌꿀 등 축산물 3개 품목임.
  - 칠레의 과일산업 국제경쟁력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과실류에 대해 대부분 45% 이상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임.

<표 11>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칠레 농산물 현황(2000년 기준)

단위: 1000 톤, 1000\$

품목	생산량	자급률 (%)	수출액	수입액	한국 관세율	
					기본세율(%)	2004년 양허관세(%)
사과	908.7	552.6	181,705	45	50	45
포도	1,895.0	188.3	523,545	25	50	45
배	332.5	168.7	57,118	0	50	45
복숭아	266.0	146.0	60,457	0	50	45
체리	31.1	128.7	18,637	0	50	24
자두	158.4	159.8	46,691	0	50	45
돼지고기	261.5	107.2	45,898	4,302	50	22.5~25
벌꿀	5.0	1,315.8	4,811	1	20	243
닭고기	378.1	103.7	13,832	36	30	18~27
호두	11.3	144.1	7,930	163	50	45(탈각:30)

자료: FAO, <http://apps.fao.org>

○ 수입이 우려되는 주요 품목의 국내 판매가격을 추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수출 단가는 칠레의 품목별 수출액을 수출량을 나눈 것으로 평균적인 fob 가격임. 따라서 특정 품종의 수출 단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출하가격은 fob 가격에 해상운임, 통관하역비, 국내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시장사용료, 수입업자 비용 및 이윤 등을 더하여 산출하였음.

<표 12> 칠레산 주요 농산물 수입가격 추정

	단가 (\$/kg)	해상운임 (\$/kg)	통관하역비 (\$/kg)	\$/Kg	원/Kg	육상운임 kg당	상장수수료, 시장사용료 등	수입업자 비용, 이윤	국내출하 가격(무관세 가정)
배	0.422	0.354	0.073	0.849	959.7	50원	5%	20%	1,272.2
복숭아	0.721	0.354	0.073	1.148	1,298.2	“	“	“	1,698.7
체리	2.690	0.354	0.073	3.117	3,524.7	“	“	“	4,504.1
자두	0.788	0.354	0.073	1.215	1,373.4	“	“	“	1,793.5
닭고기	1.028	0.354	0.073	1.455	1,644.9	“	“	“	2,135.6
호두	2.184	0.354	0.073	2.611	2,952.0	“	“	“	3,782.5
사과	0.438	0.354	0.073	0.865	978.0	“	“	“	1,295.3
포도*	0.774	0.354	0.073	1.201	1,357.8	“	“	“	1,773.8
돈육**	3.442	0.354	0.073	3.869	4,374.0	“	“	“	5,574.2
별꿀	1.042	0.354	0.073	1.469	1,661.1	“	“	“	2,155.9

환율: 2000년 기준, 1130.61원/\$

국내출하가격: 상장수수료, 시장사용료 등 5% 및 이윤율 20%를 가산한 가격임.

\* 우리나라에 수입된 포도의 관세를 포함한 도매가격은 kg당 3,100원 수준임.

\*\* 돈육 가격은 칠레가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고급육, 특정부위의 가격으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삼겹살 가격은 관세를 포함하여 kg당 5,530원임.

### 7.3. 타결안과 칠레측 요구안

#### ○ 타결안

- 쌀, 사과, 배는 제외(관세철폐는 물론 TRQ 설정에서 제외)
- 기타 과일은 10년간 관세철폐

#### ○ 칠레측 요구안(사과, 배의 TRQ 설정)

- 사과, 배에 대한 국내 소비량 1% 수준의 TRQ 보장

#### ○ 위생 및 식물위생(동식물 검역) 협상 시나리오

- 수입금지 해제조치 소요기간: 3년
- 수입금지 해제조치 소요기간: 5년

#### ○ 동식물 검역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패해액 계측안을 구성하였음.

**기준 시나리오:** WTO/DDA 농업협상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5년간 관세가 15% 감축됨. 동식물검역 여건의 변화로 2008년부터 사과와 배의 수입이 허용됨(예, 미국, 뉴질랜드, 칠레 등).

**타결안:** 사과와 배는 FTA에 의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없음. 포도는 11월부터 4월까지 계절에 한하여 관세를 10년 동안 철폐하고, 성출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관세인하 없음. 복숭아의 관세는 10년 동안 철폐. 복숭아 식물검역에 의한 수입규제 해제시기를 2008년으로 가정.

**칠레측 요구안:** 사과와 배의 TRQ를 국내 소비량의 1% 수준에서 허용.

식물검역협약에 따라 칠레에 대한 사과와 배의 수입금지 조치가 협상 타결후 3년 정도에 해제하여 4차년도부터 쿼터량수입이 가능하다고 가정. TRQ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0%로 가정. 기타 사항은 타결안과 동일.

#### 7.4. 시나리오별 피해액 추정

- 칠레와의 FTA체결로 인한 직·간접 파급영향을 과일류 및 과채류 소비 대체관계를 고려한 농업부문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별 농업 소득(명목)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타결안>

- 사과와 배 예외, 복숭아 10년간 관세 철폐, 포도 계절관세 부과를 가정할 경우 전체 과일의 소득 감소는 식물검역에 의한 수입규제로 복숭아의 수입이 본격화되지 않는 2007년까지 30억원에서 시작하여 60억원 수준으로 증가.
- 이러한 피해는 포도의 수입 증가에 의한 것임. 그러나 2008년부터 식물검역에 의한 복숭아의 수입규제가 해제된다고 가정하면 2008년 전체 과일(과채류 포함) 농가의 소득감소는 250억원(과일 소득의 1.2%)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450억원(과일 소득의 2% 수준) 정도로 확대.

##### <칠레측 요구안>

- 사과와 배에 국내 소비량의 1%에 해당하는 TRQ를 설정할 경우 이것이 직접적으로 과일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100억원 이내로 나타남(칠



### 7.4.1. 사과

#### <기준 전망치>

- 사과소득(명목)은 2002년 3,547억원(추정)에서 2007년 4,438억원으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수입이 허용되는 2008년부터 가격하락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약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타결안>

- FTA대상에서 사과를 제외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사과소득은 기준전망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2008년부터 전반적인 과일수입에 따른 소비대체로 인하여 미미하나마 기준 전망치에 비해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약 1억~6억 수준)

<표 14>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변화: 사과

사과		2002	2006	2007	2008	2010	2012
재배면적 (천ha)	기준전망치	26.2	25.3	25.0	24.5	23.8	22.7
	타결안						
	칠레요구안			24.9	24.3	23.6	22.6
생산량 (천톤)	기준전망치	393.0	417.8	417.2	414.3	411.7	403.0
	타결안						
	칠레요구안		416.7	415.0	411.2	408.8	399.9
농업소득 (억원)	기준전망치	3,547	4,142	4,438	3,162	2,949	2,695
	타결안		4,142	4,438	3,161	2,945	2,689
	칠레요구안		3,387	3,279	3,155	2,943	2,688

#### <칠레측 요구안>

- FTA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신 국내소비량의 1%를 Quota로 허용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쿼터량만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50억원 정도의 소득 감소가 예상됨. 그러나 칠레에 대한 식물검역이 해제되어 쿼터량 이외에도 수입이 허용된다면 2006년부터는 사과소득은 급격히 하락하여 기준 전망치와의 차이가 750억원에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160억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소득차이는 2008년부터 다시 전반적인 과일류의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점차 사라져 시나리오 1과 유사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7.4.2. 배

##### <기준 전망치>

- 배 소득(명목)은 2002년 3,504억원(추정)에서 2007년 5,017억원까지 증가하다가 사과와 마찬가지로 수입이 허용되는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 2,87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 <타결안>

- FTA 대상에 배를 제외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배 소득(명목)의 흐름은 기준 전망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과의 경우에서 처럼 2008년 이후 전반적인 과일류 수입에 따라 기준 전망치와 3억~5억의 소득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칠레측 요구안>

- 국내소비량의 1%를 TRQ로 허용하고 TRQ 물량만 수입되는 경우 배 소



득 감소는 연간 50억원 수준으로 전망됨. 그러나 식물검역에 의한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2006년부터 TRQ 물량 이외에도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2006년 배 소득은 3,549억으로 기준 전망치에 비해 1,120억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 약 1,600억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이후 배소득은 다시 기준전망치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냄.

<표 15>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변화: 배

배		2002	2006	2007	2008	2010	2012
재배면적 (천ha)	기준전망치	25.4	25.1	25.0	24.9	24.3	23.7
	타결안		25.1				
	칠레요구안		25.0	24.9	24.7	24.1	23.6
생산량 (천톤)	기준전망치	408.3	434.2	432.8	435.2	431.6	424.9
	타결안		433.8	431.9	433.5	429.6	422.6
	칠레요구안		433.8	431.9	433.5	429.6	422.6
농업소득 (억원)	기준전망치	3,504	4,677	5,017	3,360	3,138	2,879
	타결안		4,677	5,017	3,356	3,134	2,876
	칠레요구안		3,549	3,422	3,342	3,112	2,846

### 7.4.3. 포도

#### <기준 전망치>

- 기준전망치에 따를 경우 포도 소득(명목)은 2002년 2,094억원에서 2008년 5,105억원까지 증가하다가 과일류 수입이 본격화된다고 가정한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4,8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

#### <FTA 체결, 계절관세 부과>

- FTA체결에 따라 11월에서 4월 사이의 관세는 10년간 철폐할 경우 2004년부터 포도의 계절관세 철폐효과가 나타나 2004년 포도소득은 2,825억으로 기준 전망치에 비해 29억원 감소. 이러한 차이는 점차 커져 2010년 200억원에 이룸(특히 전반적인 과일 수입이 허용되는 2008년부터 전반적인 과일류 가격하락으로 소득차이가 현저).

<표 16>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변화: 포도

포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8	2010	2012
재배면적 (천ha)	기준전망치	26.0	26.2	26.0	26.0	26.1	26.3	26.1	25.5
	타결안		26.2	26.0	25.9	25.8	25.7	25.4	24.8
생산량 (천톤)	기준전망치	383.9	430.7	427.2	429.7	433.8	440.0	451.5	448.8
	타결안		430.7	427.1	429.2	430.1	431.3	439.0	436.2
농업소득 (억원)	기준전망치	2,094	2,335	2,854	3,396	3,980	5,105	5,018	4,743
	타결안		2,335	2,825	3,365	3,936	5,017	4,812	4,455

#### 7.4.4. 복숭아

##### <기준 전망치>

- 복숭아 소득(명목)은 2002년 747억원(추정)에서 수입이 허용되는 2008년 2,121억원까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후 감소세로 반전하여 2010년 2,048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

##### <10년간 관세철폐>

- 복숭아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는 시나리오 1과 2의 경우 대 칠레 식물검역 해제로 수입이 허용되는 2008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여 수입

첫해인 2008년 복숭아 소득은 1,973억원으로 기준 전망치에 비해 148억원 감소.

- 2010년 복숭아 소득은 1,819억원으로 기준 전망치에 비해 229억원 감소할 것을 전망됨. 이러한 소득 감소는 복숭아 농가소득의 10% 수준임.

<표 17>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변화: 복숭아

복숭아		2002	2006	2007	2008	2010	2012
재배면적 (천ha)	기준전망치	15.6	16.2	16.3	16.4	16.5	16.4
	타결안		16.2	16.2	16.2	16.1	16.0
생산량 (천톤)	기준전망치	170.4	197.0	198.4	200.7	201.1	200.9
	타결안		197.0	198.4	198.4	197.4	196.2
농업소득 (억원)	기준전망치	747	1,601	1,841	2,121	2,048	1,929
	타결안		1,601	1,841	1,973	1,819	1,641

#### 7.4.5. 여타 과일류(감, 감귤류, 자두, 키위, 체리 등 기타 과일)

- 칠레와의 FTA 체결로 인한 파급영향은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하는 여타 과일 및 과채류와의 소비대체효과를 나타냄.
- 단감 및 감귤, 자두, 키위, 체리 등의 직·간접 영향 품목의 농업소득의 흐름은 기준전망치에 따를 경우 2002년 5,883억원에서 2012년 약 8,563억원으로 전망.
- 여타 과일류 소득은 시나리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2006년까지 기준 전망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가, 2007년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연간 10억원 정도의 소득 감소 효과를 나타냄.

<표 18> 시나리오별 농업소득의 변화: 여타 과일

		2002	2003	2006	2008	2010	2012
여타 과일 (억원)	기준전망치			7,234	7,581	8,112	8,563
	타결안	5,883	8,656	7,234	7,572	8,100	8,547
	칠레요구안			7,234	7,572	8,093	8,543

#### 7.4.6. 축산물 파급영향

- 축산물의 경우 시장개방 양허안 수준, 국내시장 규모, 수입 규모, 칠레의 수출능력 등을 고려할 때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망됨.

##### <쇠고기>

- 2001년 쇠고기 수입량은 16만 6천톤(1998-2001 평균 17만 2천톤)으로 TRQ 물량 400톤의 TRQ 물량은 평균 수입량의 1% 미만.
- 실제 우리의 평균 수입단가가 \$2.5~3.1/Kg이고 칠레의 수출단가가 \$3.5/kg(1995-2000년 평균 수출가격)인 점과 동물검역여건을 감안할 때 국내 쇠고기 수급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다만 신선/냉장 쇠고기의 대칠레 수입비중이 TRQ 물량만큼은 증가할 수 있음.

##### <돼지고기>

-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10만톤 이상으로 이미 개방이 진척된 품목임.

- 냉동도체는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으로 분류된 점, 그리고 10년간 관세철폐 대상인 냉장육은 수송기간(1개월 이상)이 칠레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산과의 직접적인 경쟁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 실제 우리의 평균 수입단가가 \$2.6/Kg 내외이고 칠레의 수출단가가 \$3/kg (1995-2000년 평균 수출가격)인 점을 고려할 때, 10년간 20% 수준의 관세철폐 영향은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에서 칠레산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됨.

#### <닭고기>

- 2001년 닭고기 수입량은 8만 5천톤(1998-2001 평균 5만 2천톤)으로 TRQ 물량 2천톤은 4개년 평균 수입량의 5% 정도임.
- 실제 우리의 평균 수입단가가 \$1.2/Kg내외이고 칠레의 수출단가가 \$0.9/kg (1995-2000년 평균 수출가격)인 점을 고려할 때 칠레산 수입비중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의 주 수입선인 덴마크와 벨기에로부터의 수입가격(\$0.9~1.0/Kg)을 고려할 때 국내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8. 피해대책 및 과수산업 발전 방향

### 8.1. 과수산업 현황

#### 8.1.1. 생산

##### 가. 규모의 영세성

- 과수 재배농가의 경영규모(2000년 기준)를 보면, 전체 과수농가 중 재배 규모가 0.5ha 미만인 농가 비중이 62.3%(사과 51.2%, 배 67.6%, 복숭아 76.8%, 포도 73.0%)로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가가 대다수이며, 2ha 이상의 비교적 규모화 된 농가 비중은 3.3%(사과 4.0%, 배 3.5%, 복숭아 0.7%, 포도 0.5%)에 불과함.

<표 19> 재배면적 규모별 농가수 비중(2000년)

단위 : %

	0.5ha미만	0.5~1.0ha	1.0~2.0ha	2.0ha초과	계
과수전체	62.3	23.7	10.8	3.3	100.0
사과	51.2	30.8	14.0	4.0	100.0
배	67.6	20.2	8.6	3.5	100.0
복숭아	76.8	18.0	4.5	0.7	100.0
포도	73.0	21.6	4.9	0.5	100.0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0

### 나. 경영주의 고령화

- 과수는 영년생 작물로 농가 입장에서는 최소한 10~20년 이상의 장기 영농계획 하에 투자를 실시하여 영농에 임하므로 과수산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60세 이상의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과일의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감소는 영농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표 20> 과수농가 경영주의 연령 구조(2000년)

단위 : %

	농가전체	과 수 농 가				
		과수전체	사 과	배	복숭아	포 도
40세 미만	6.6	7.5	6.7	8.1	5.1	6.7
40~49	17.2	19.6	22.0	23.3	19.0	19.1
50~59	25.2	28.1	30.4	29.5	28.7	27.8
60~69	34.7	32.2	31.7	29.1	34.3	34.4
70세 이상	16.4	12.7	9.2	10.1	12.9	1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0

### 다. 높은 전업농 비중

- 농가조수입 중에서 과수 판매액 비중이 가장 높은 농가 중 64.9%가 전업농이며, 특히 사과는 해당 농가의 79.3%가 전업농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농업에 의한 소득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겸업농의 경우도 1종겸업농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lt;표 21&gt; 과수농가의 전·겸업 비중(2000년)

단위 : %

	과수전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전업	64.9	79.3	66.6	68.4	64.7
겸업	35.1	20.7	33.4	31.6	35.3
1종겸업	17.9	13.5	18.7	18.5	20.2
2종겸업	17.2	7.2	14.8	13.1	1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0

## 라. 주산지 중심의 생산 구조

- 배를 제외한 사과, 복숭아, 포도, 자두 등 주요 품목의 재배지역이 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과수산업의 성장률 둔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lt;표 22&gt;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2001년)

단위 :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지역 (면적비중)	<u>경북(64.0)</u> , 충북(12.4), 충남( 8.5), 기타(15.2)	충남(18.0), 전남(17.3), 경북(17.1), 경기(17.0), 기타(30.6)	<u>경북(50.0)</u> , 충북(17.1), 기타(33.0)	<u>경북(42.9)</u> , 충북(15.4), 경기(13.0), 기타(28.7)	<u>경북(75.4)</u> , 충북( 9.7), 기타(14.9)

자료: 농림부, 작물통계, 2001



## 8.1.2.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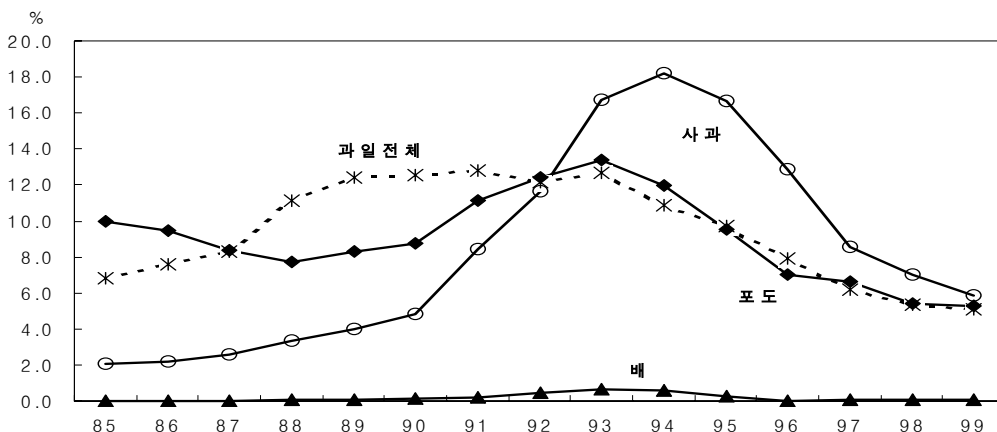
### 가. 출하시기의 집중 현상

- 사과와 배는 추석과 설에 연중 공급량의 30~40% 정도 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기별 출하집중도가 매우 높음.
  - 사과는 추석이 들어 있는 9월의 출하비중이 15~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설이 들어 있는 1~2월로 13~15%를 차지하였으며, 배는 추석이 들어 있는 9월에 전체 출하량의 18~21%, 설이 들어 있는 1~2월에는 14~21%를 차지함.
- 포도는 주 출하시기가 7~8월 출하비중이 높고, 9~10월 출하비중이 감소하여 출하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 가공산업의 취약

- 과일의 소비는 주로 생과 위주로 이루어지며, 가공비중이 매우 낮음. 과일류의 총생산량 중 가공 비중은 1999년 현재 5.2%에 불과함.

<그림 2> 과일류의 가공 비중 추이(3년 이동평균)



자료 : 농림부, 「과일 및 채소류 가공현황」, 각 연도

### 8.1.3. 소비

- 식생활의 다양화, 고급화로 1인당 과일 수요는 1990년대 초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는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음.

<표 23> 과일 1인당 소비량 동향

연도	단위 : kg				
	전 체	사 과	배	복숭아	포 도
1985	36.0	13.0	3.1	3.2	3.7
1990	41.8	14.5	3.6	2.7	3.1
1995	55.4	15.9	3.9	2.9	7.1
1996	52.3	14.2	4.7	2.8	7.8
1997	57.9	14.1	5.6	3.2	8.7
1998	49.2	9.8	5.5	3.3	8.6
1999	55.7	10.4	5.4	3.3	10.2
2000	53.4	10.3	6.7	3.6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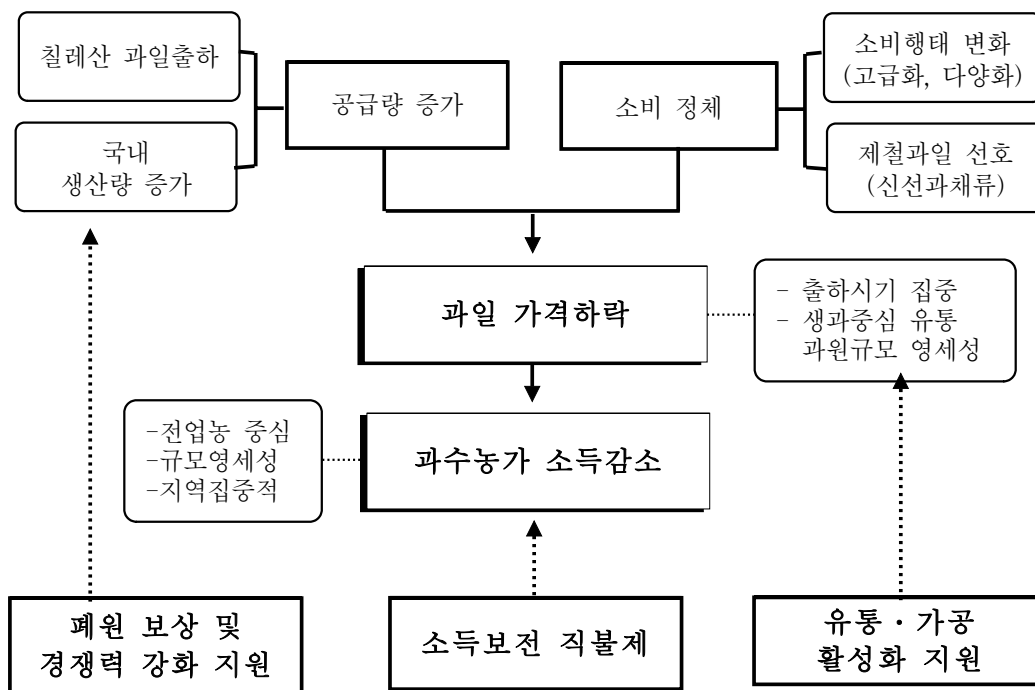
주: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 인구수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연도

- 저장과일 보다는 제철에 출하되는 과채류 등으로 소비대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임.

## 8.2.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상의 필요성

- 검역규제로 포도와 오렌지를 제외한 생과의 수입이 거의 없으나 칠레와 FTA 협상은 검역분야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사과, 배와 같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칠레산 과일의 수입 가능성이 높음.
- 칠레산 과일의 국내 출하 가능시기가 국내산 사과와 배의 저장과일 출하시기와 경합할 가능성이 높음. 과일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수요자의 소비행태 변화 정도가 높은 편이므로 수입과일의 품질이 좋고, 수확 후 곧바로 국내에 출하될 경우 국내산 저장과일의 피해가 예상됨.
- 우리나라 과수농업은 생산지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과수농가의 소득 하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일부 주산지의 경우 소득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우려됨.
- 전반적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칠레와의 FTA 협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될 과수농가의 소득하락으로 인한 영농포기, 재배규모 축소에 따른 손실, 지역경제의 악화 등 국내 과수산업에서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한 보상과 향후 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불가피함.

<그림 3> 과수산업의 특성과 안정화 대책



### 8.3. 폐원보상 방안

#### 8.3.1. 폐원보상(기대소득 보상)의 당위성

- 칠레산 과일 등 수입과일이 출하될 경우 국내시장의 과일 공급 과잉과 이로 인해 소득저하가 우려되며, 정책변화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피해 예상 품목의 폐원 추진과 같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기존의 폐원보상 방식은 기준 년도의 소득에 대한 보상방식이었음. 그러나 과원 개원 시 농가는 일정 기간동안 생산을 통한 기대소득을 예상

하고 투자를 결정함. 따라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폐원보상 수준은 농가의 기대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기대소득 보상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원 보상은 생산지원과 관계가 없어서 WTO 협정의 Green Box에 해당되므로 필요재원 조달상의 제약은 없음.

#### ○ 보상 조건

	사 과	배	포 도
재배 가능기간	일반 30년 왜성 20년	소식 30년 밀식 30년	15년
지 원 기 준	- 수령 및 주수 기준 기대소득 보상		
현재가치 할인률	- 8%(정기예금이자율 6% + 위험률 2%) 적용		
재 원 조 달	- 정부 및 지자체(100%)		
보 상 방 법	- 폐원보상은 기대소득 보상 원칙 - 조기폐원 유도를 위한 연차별 차등보상률 적용 - 폐원보상을 받은 과원의 동일 품목 신규 재배 불가		
보 상 시 기	- 칠레산 과일의 국내시장 출하 전(2003~2006년)		
폐 원 예 외	- 사과의 경우 최근에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조성된 저수 고밀식과원		

- 폐원보상 시기는 FTA가 체결된 시점에서부터 식물검역 해제로 칠레산 과일의 수입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2003~2006년)에 실시하고, 칠레산 과일이 수입될 경우 소득보전 직불제에 의한 피해보상을 원칙으로 함.

### 8.3.2. 폐원보상 수준 산정 방법(사과 일반재배의 경우)

- ① 수령별 소득(10a당) = (평균가격 × 수령별 단수) - 경영비

② 수령별 기대소득 =  $NPV\left(\sum_{i=t+1}^{30} I_i\right)$ ,  $I_i$ : 수령별 소득,  $t$ : 수령

- 예를 들면, 20년생의 기대소득 =  $NPV\left(\sum_{i=21}^{30} I_i\right)$

③ 폐원보상 추정 금액 = 수령별 기대소득 - 대체작물 기대소득

- 자가노력비 차이

- 대체작물 기대소득 =

$$NPV\left(\sum_{i=t+1}^{30} SI_i\right), SI_i: \text{대체작물 평년소득}, t: \text{수령}$$

- 자가노력비 차이 =

$$NPV\left(\sum_{i=t+1}^{30} LP_i\right)$$

$$LP_i = \text{해당품목 자가노력비} - \text{대체작물 자가노력비}, t: \text{수령}$$

④ 폐원보상 수준 시나리오 검토

- 조기 폐원 유도를 위한 연차별 차등 보상

### 8.3.3. 수령별 폐원보상 수준 산정

○ 자료 성격

- 수령별 단수는 원예연구소 발표자료(1997) 기준임.

- 가격(농가판매가격), 경영비 등의 데이터는 평년기준임.

- 대체작물 소득 및 자가노력비는 쌀과 노지고추에 대하여 50:50 적용

- 수령별 자가노력비는 동일하다고 가정

○ 폐원보상 수준 검토

- 과원 폐원 보상은 평균 3,562만원/ha 수준이며, 수령에 따라 최소 613만원, 최대 6,636만원까지 분포함.
- 시나리오에 따라 사과 재배면적(2002년 기준)의 7.6%(2,000ha)를 폐원할 경우 소요재원은 762억원, 13.3%(3,500ha)를 폐원할 경우 소요재원은 1,334억원 정도임.

○ 조기폐원 유도를 위한 연차별 보상 차등률 적용 검토

- 조기 폐원 유도를 위하여 폐원보상 첫 해에는 보상액의 100%를 지급하고, 2차년도에는 90%, 3차년도에는 80% 등으로 연차별 차등률 적용

&lt;표 24&gt; 사과(일반재배) 수령별 보상액(안)

단위 : 천원/10a

수령	보상액 (100%)	연차별 차등 보상				
		1년차(90%)	2년차(80%)	3년차(70%)	4년차(60%)	5년차(50%)
3	613	552	491	429	368	307
4	818	736	654	572	491	409
5	1,022	920	818	716	613	511
6	1,227	1,104	981	859	736	613
7	1,431	1,288	1,145	1,002	859	716
8	1,636	1,472	1,308	1,145	981	818
9	1,840	1,656	1,472	1,288	1,104	920
10	2,044	1,840	1,636	1,431	1,227	1,022
11	3,350	3,015	2,680	2,345	2,010	1,675
12	4,453	4,008	3,562	3,117	2,672	2,226
13	5,353	4,818	4,283	3,747	3,212	2,677
14	6,051	5,446	4,841	4,236	3,631	3,025
15	6,445	5,801	5,156	4,512	3,867	3,223
16	6,636	5,973	5,309	4,646	3,982	3,318
17	6,524	5,872	5,219	4,567	3,914	3,262
18	6,412	5,771	5,129	4,488	3,847	3,206
19	6,299	5,669	5,040	4,410	3,780	3,150
20	6,187	5,568	4,950	4,331	3,712	3,094
21	5,568	5,012	4,455	3,898	3,341	2,784
22	4,950	4,455	3,960	3,465	2,970	2,475
23	4,331	3,898	3,465	3,032	2,599	2,165
24	3,712	3,341	2,970	2,599	2,227	1,856
25	3,094	2,784	2,475	2,165	1,856	1,547
26	2,475	2,227	1,980	1,732	1,485	1,237
27	1,856	1,671	1,485	1,299	1,114	928
28	1,237	1,114	990	866	742	619
29	619	557	495	433	371	309
평균	3,811	3,430	3,049	2,667	2,286	1,905
최소	613	552	491	429	368	307
최대	6,636	5,973	5,309	4,646	3,982	3,318
표준편차	2,200	1,980	1,760	1,540	1,320	1,100

주: 대체 작물 소득 및 자가노력비는 (쌀+노지고추)/2로 추산



&lt;표 25&gt; 시나리오별 사과(일반재배) 폐원보상액

단위 : 억원

	폐원규모 (ha)	보상액 (100%)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4년차 (60%)	5년차 (50%)
보상액 (천 원/10a)	-	3,811	3,430	3,049	2,667	2,286	1,905
재배면적 10% 수준의 폐원 가정	2,000	762	686	610	533	457	381

## &lt;사례 1&gt; 제주도 부적지 감귤과원 폐원정비사업(2002년)

- 사업량 : 200ha
- 사업비 : 60억원(국비 30%, 지방비 40%, 감귤기금 10%, 자담 20%)
- 지원단가 : 24백만원/ha(4개년 평균소득 기준, 자담 20% 제외)
  - 수령기준 : 7~10년생 55%, 11~15년생 85%, 16~20년생 95%,  
21~35년생 100%, 36~40년생 95%, 41년생 이상 85%  
(7년생 미만 유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주도농업기술원 조사 결과)
- 폐원대상 과원
  - 재배 부적지(해발 200m 이상의 고지대, 암반지대, 경사도 15°이상 지역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낮은 과원)
  - 재해 상습지 과원(한해, 동해, 가뭄, 침수 등의 재해위험 상존 지역)
  - 친환경 저해 과원(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환경 피해 예상 과원)
- 사업비 보조를 받아 폐원한 감귤과원은 10년간 감귤재배 불가

### <사례2> 양조용 포도 폐원보상 사례

- 사업기간 : 1990~1993년
- 사업량 : 636ha
- 사업비 : 11,500백만원(국고보조 100%)
- 지원단가 : 400만원/ha(소득 기준)
  - 수령기준 : 2~3년생 16백만원, 4~9년생 20백만원,  
10~14년생 16백만원, 15년생이상 12백만원
- 연도별 폐원보상률 차등 적용
  - 조기폐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차별로 보상률을 차등하여 보상함.
  - 1990년 = 100%, 1991년 = 90%, 1992년 = 80%, 1993년 = 70%

## 8.4.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 방안

### 8.4.1. 당위성

- 현재의 과일 수급상황에서 칠레산 과일이 국내에 출하될 경우 해당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과일의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폭을 충분히 보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별도의 소득지원정책이 필요함. →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
- 과일의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 목적은 칠레산 과일의 수입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감소 충격을 완화시켜 시장적응력을 높이는 것임.

-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기간은 농가의 시장적응력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8.4.2. 보상 방식

- 칠레산 과일의 수입에 따른 피해가 주로 2006년과 2007년 두 해에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발생하는 과수농가의 피해액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보상 규모를 검토
-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제외 농가
  - FTA 체결 이후 신규 재배 농가
  - 폐원보상을 받고 폐원한 과원 및 농가

#### 8.4.3. 소득보전 직불액 산정

- 칠레산 과일의 수입에 따른 피해액 추정 결과, 2006년과 2007년에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때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만큼을 소득보전 직불액으로 지급하는 방법 검토
- 소득보전 직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농가의 소득손실 보전과 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목적이 있음. 따라서 소득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는 것보다는 농가가 일정부분의 피해를 감수함으로써 농가의 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과 직불액 규모는 보상률을 소득감소분의 80% 보상, 20% 농가부담률로 할 때 2006년에는 236천원~239천원/10a, 2007년에는 364천원~

366천원 수준으로 시나리오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배는 2006년에는 360천원/10a, 2007년에는 515천원/10a 수준으로 시나리오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보전 직불에 필요한 재원은 보상률 80%의 경우 사과는 2006년에 598억~604억원, 2007년에는 922억~927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며, 배는 2006년에 902억원, 2007년에는 1,245억원 정도가 소요됨.
- 보상률 60%로 할 경우에는 사과는 2006년에 449억~453억원, 2007년에는 691억~695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며, 배는 2006년에 677억원, 2007년에는 957억원 정도가 소요됨.
- 사과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제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임.
- 그러나 배의 경우 소득보상률을 60%로 하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될 경우에도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를 벗어나게 됨.

<표 26> 사과 소득 보전 직불액

보상률	연도	천원/10a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80%	2006	236	239	239
	2007	364	366	366
60%	2006	177	179	179
	2007	273	275	275

&lt;표 27&gt; 배 소득 보전 직불액

보상율	연도	천원/10a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80%	2006	360	360	360
	2007	514	515	515
60%	2006	270	270	270
	2007	381	381	381

- 따라서 배의 경우 소득보상보다는 폐원보상을 통한 생산 감축이 선행되어야 함.

## 8.5.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생산비 절감 및 규모화 추진>

- 칠레산 과일이 국내시장에 출하되면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저수고밀식재배(왜성재배, Y자 밀식 등)와 같은 생력화와 저비용 과원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함.
- 사과 저수고밀식재배의 효과
  - 조기 증수 및 노력절감
    - 조기 증수 : 5년차 누계수량(kg/10a) : 1,020 → 14,260(14배)
    - 노력절감 : 전정, 수확 등(시간/10a) : 234 → 150
  - 착색도 및 정형과율 향상에 의한 품질 고급화
    - 착색(적색)도 : 10.9 → 24.3(적색도는 25~30가 착색이 좋은 과실임)
    - 정형과율 : 50 → 65%

－ 농약 절감

· 살포회수 : 14 → 11회/년

<표 28> 사과 연차별 수량 및 노동력 절감 효과

	수량(kg/10a)				노동력절감(5년차, 시간/10a)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전정	적과	수확 작업	병해충 방제 등	계
일반재배	-	-	230	790	39.5	36.5	45.2	113.0	234.2
저수고 밀식재배	2,280	3,360	4,120	4,500	25.0	24.0	40.0	61.0	150.0

자료: 농촌진흥청, 작목별 작업단계별 노동투하시간, 1999

<표 29> 사과 재배방법별 경영성과 비교

	단 수(kg/10a)	생산비(원/kg)	비 고
일반재배(전국평균)	2,420	749	-
저수고밀식재배	4,500	400	추정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분석자료, 2000

○ 배 Y자 밀식재배 효과

- － 조기증수(7년차 수량) : 988 → 3,366kg/10a (240% 증수)
- － 노력절감(전정, 적과, 봉지씌우기, 수확) : 190 → 141시간/10a(26%절감)
- － 성과기 단축 : 12~15 → 7~8년 (5~7년 단축)
- － 성과기 단축 및 노력절감으로 경영효과 3년 이상 단축

<표 30> 배의 연차별 수량 및 노동력절감 효과

	수량(kg/10a)				노동력절감(7년차, 시간/10a)				
	4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	전정	적과	봉지 씌우기	수확 작업	계
Y자형(330주/10a)	1,760	2,140	3,360	5,210	30.9	55.4	42.1	12.7	141.1
배상형(41주/10a)	155	247	980	2,220	41.2	71.5	56.9	20.4	190.0

자료: 경기도농업기술원, 시험연구보고서, 1996

&lt;표 31&gt; 배 재배방법별 경영성과 비교(10a)

수 령	조수입	생산비	경영비	소득	순수익
Y자형(7~8년생)	3,878	3,009	1,352	2,578	869
관행(10~14년생)	4,013	3,150	1,212	2,801	863

자료: 경기도농업기술원, 시험연구보고서, 1996

### <고품질 과일 생산>

- 소비자의 과일소비 행태가 고급화됨에 따라 고급품과 저급품 간의 가격 차이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일의 이미지 개선 및 품질향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몰량 위주의 생산 방식에서 질 위주의 생산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철저한 간벌 및 적과 실시, 완숙과의 수확 및 출하를 통한 품질향상
- 생산된 과일의 철저한 품질관리 및 상표관리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도입 필요

### <가공 활성화 사업 지원>

- 고품질의 가공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보다는 저급품의 시장격리 차원의 가공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고품질의 가공품 원료는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국내과일보다 싸게 수입되고 있으며, 기존의 부가가치 창출형 가공사업은 국내 대기업과의 시장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큼.

- 생과시장의 가격 지지를 위한 저급품 시장격리 차원의 가공사업은 과수 농가의 자조금과 정부의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운영
  - 가공품 원료는 과수농가에서 원가로 공급
  - 가공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발생 부분은 저급품 시장격리에 따른 가격 상승폭 중 일정부분을 농가로부터 자조금 형식으로 각출하여 보전
- 재원조달, 가공사업 지원규모, 운영방법 및 주체 등 검토

####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의 다변화>

-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에 의한 국내 과일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의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수요의 확대 필요
- 수확 후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과일 시장 겨냥
  - 중·저품질의 과일시장은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이 없으므로 고품질 시장을 겨냥해야 함.
- 수출시장의 확보 및 지속적 유지를 위한 품종개량과 품질고급화
  - 수출단지의 지정 및 철저한 관리 필요

#### <유통 기반 확충 지원>

- 과일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급화와 표준화 기준 확립 및 시행
  - 시장가격 결정에서 유리성 확보 가능
  - 운송 및 보관 비용 등 유통비용의 절감
  -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과일 공급으로 과일 수요 증대 효과



## 8.6. 농가의 자구노력 지원

### <노령 및 경제성 낮은 수목의 간벌 지원>

- 과일의 생산량 조정, 품질향상, 농작업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간벌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지원 검토

### <품목별 자조금제 도입 및 지원>

- 정부의 지원은 재원조달의 문제와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단기적 지원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 품목별 자조금제는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여 운영을 주도할 수 있고, WTO 규정의 정부보조 제한문제를 일정 수준에서 극복할 수 있으므로 과수산업의 여건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자조금 부과대상자 선정
  - － 자조금 부과 대상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조금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모든 당사자(단체)이어야 함. 즉, 생산자, 유통업자, 과일수입업자 등을 들 수 있음.
- 자조금의 활용 범위 :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의 협약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일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도 병행해야 하므로 지원자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범위의 설정 가능
  - － 과일의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가격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판촉

- 생산기술 개발 및 유통개선 관련 조사·연구
- 과수 산업 관련 정보 수집 및 생산자 교육 지원
- 과일 출하량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가공사업 활성화 등)

○ 운영주체 : 품목별 생산자단체

## 부록

&lt;부표 1&gt; 한·칠레 FTA 양허유형별 대상품목

양 허 유 형	대 상 품 목
① 제외	쌀, 사과(신선), 배(신선)
② 계절관세	포도(신선): 11월부터 4월까지
③ DDA협상 이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소·화훼류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잎담배등</li> <li>○ 곡류 : 보리, 콩, 옥수수, 쌀, 녹두, 고구마(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등</li> <li>○ 축산물 : 돼지고기(냉동도체, 설육), 오리, 분유, 버터, 치즈(신선, 커드 등), 계란, 난황, 꿀, 밀크, 크림, 녹용 등</li> <li>○ 과일류 : 감귤, 대추, 잣, 밤, 대추야자, 오렌지쥬스(농축), 파인애플, 망고 등</li> <li>○ 기타 : 수박, 녹차, 홍차, 생강, 인삼, 은행, 과당, 포도당, 생사, 잣, 대두유, 유채유, 참기름, 참깨 등</li> </ul>
④ TRQ제공 + DDA협상 이후 논의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냉동,조제저장), 유장 (1,000톤), 자두(280톤), 맨더린(100톤), 기타채소(100톤)

양 허 유 형	대 상 품 목
⑤ 16년내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제분유</li> <li>○ 기타과실(건조), 조제식료품, 배·딸기(조제저장), 가공품, 혼합주스(사과, 포도, 기타과실)</li> <li>○ 차조제품 등</li> </ul>
⑥ 10년내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 : 돼지고기, 양고기, 식용설육(소 등), 닭고기(미절단, 냉장), 요구르트, 종란, 조란, 치즈(기타), 소시지 등</li> <li>○ 채소화훼류 : 절화류(백합 등),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등</li> <li>○ 과실류 :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실류(일시저장, 조제저장),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메론, 과일주스(오렌지·사과·복숭아), 채소주스 등</li> </ul>
⑦ 9년 관세철폐	기타 과실주스
⑧ 7년내 관세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류 : 복숭아 통조림, 잼, 주스류(포도, 딸기), 복숭아(조제저장)</li> <li>○ 축산물 : 칠면조고기(TRQ 600톤제공)</li> <li>○ 곡류 : 옥수수(종자), 완두·콩(냉동), 감자 등</li> <li>○ 채소류 : 기타채소(냉동), 균질채소 등</li> <li>○ 기타 : 호두, 나무딸기, 수프등</li> </ul>

양 허 유 형	대 상 품 목
⑨ 5년내 관세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 : 말, 양, 닭, 칠면조, 기타동물, 식용설육, 알, 로얄제리, 꿀, 말굽, 사향 등</li> <li>○ 화훼류 : 튜울립·백합·기타화훼(휴면상태), 치커리 뿌리, 장미·난초·카네이션, 절화류(튜울립 등) 등</li> <li>○ 채소류 : 버섯종균, 식물잎, 배추, 상치,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동), 버섯(일시저장),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주스 등</li> <li>○ 기 타 : 산림수, 아몬드,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식물성유지(올리브유 등), 마가린, 당(맥아등), 코코아, 초코렛, 조제식료품, 면류, 빵, 조제저장과실, 조제저장(완두콩, 밤 등), 효모, 두부, 포도주, 위스키, 소주, 박류, 겨자분, 단백질, 과실나무 등</li> </ul>
⑩ 즉시 관세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 : 종우, 종돈, 종계, 비계, 정액,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동물털,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뼈 등</li> <li>○ 곡 물 :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코프라, 면실, 피마자, 겨자씨, 기타 씨, 종자, 당 등</li> <li>○ 기 타 :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나무껍질, 식물성유지(팜유 등), 면실, 아마, 콜라베이스, 커피 등</li> </ul>

## &lt;부표 2&gt; 한·칠레 FTA 양자 세이프가드(SG) 조치

	한·칠레 FTA 농산물 양자 SG	WTO / SG
○적용요건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피해 우려로 시장교란(market disturbance)발생 ○피해 및 우려를 판단할 객관적 요소에 관한 규정 없음.	○절대적, 상대적 수입증가로 국내산 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초래 및 초래의 우려 ○시장점유율, 가동율, 고용 등 객관적 요소 종합고려
○조치	○관세감축의 정지 또는 ○MFN 세율 또는 FTA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인상	○관세인상 또는 수량제한
○발동기간	○제한없음.	○최대 4년(연장가능 : 8년까지)
○잠정조치	○120일간 잠정조치 발동	○피해 및 우려에 관한 명백한 증거 하에 200일간 잠정조치 발동
○사전협의를 및 수출국의 대응조치	○수출국 요청 시 보상협의를 ○30일 이내 미합의 시, SG 발동 및 수출국 보복조치 가능 - 동등한 수준의 양허 정지 및 관세인상	○의무적인 사전협의를 ○30일 이내 미합의 시, SG발동 및 수출국 보복조치 *절대적 수입증가인 경우 3년간 보복금지

## &lt;부표 3&gt; TRQ 제공+DDA협상 이후 논의 품목: 수입실적이 많은 품목

품 목(톤)	TRQ제공(A)	2001 수입(C)	A/C	비고(국내생산)
쇠고기	400	166,000	0.06%	163,000
닭고기	2000	83,000	2.4%	267,000
유장	1000	38,000	2.6%	-
기타채소(건조)	100	1,538	6.5%	653,000
계	3,300톤	288천톤	1.1%	

## &lt;부표 4&gt; TRQ 제공 + DDA협상 이후 논의 품목: 수입실적이 적은 품목

품 목(톤)	TRQ제공(A)	국내생산(B)	A/B	비고(2001수입)
맨더린	100	645,000	0.02%	58
차두	280	58,000	0.5%	-
계	380톤	703천톤	0.05%	

정책연구보고 P52 / 2002. 10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

등 록 제5-10호(1979. 5. 25)

인 쇄 2002년 10월

발행 2002년 10월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http://www.krei.re.kr))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E-mail:[Dongyp@chollian.net](mailto:Dongyp@chollian.net))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